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영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636

발의연월일: 2022. 12. 2.

발 의 자:최영희·유경준·하영제

김학용 · 김승수 · 임이자

이채익 · 김성원 · 김태호

최승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함으로써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.

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 권과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고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, 이와 같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 할 필요성은 사망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 없음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도 이법의 보호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(안 제2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2(사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(이하 "사자(死者)의 개인정보"라 한다)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.
 -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유족(사망한 사람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손자녀,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)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 및 제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④ 그 밖에 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2조의2(사자의 개인정보에 관
	한 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의
	개인정보(이하 "사자(死者)의
	개인정보"라 한다)는 이 법에
	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.
	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자의
	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
	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
	할 때에는 유족(사망한 사람의
	배우자, 자녀, 부모, 손자녀, 조
	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)
	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
	아야 한다.
	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자의
	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 및 제공
	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부
	<u>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</u>
	<u>한다.</u> ④ 그 바레 시킨이 케이저버
	<u>④ 그 밖에 사자의 개인정보</u> 보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
	보오에 내아 <u>역 필요한 사</u> 정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	네 중 중 중 은 도 경 안 나.